

自由中國商標制度解

金 瑞 一
<辨 理 士>

Ⅰ 制度의 概要

自由中國 商標法은 1972년에 改正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 改正法의 概要 및 그 要點은 다음과 같다.

가. 先願主義

商標出願에 있어서 둘 이상의 者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를 출원하였을 경우 舊法에서는 상표사용후 1년이 지나서 登錄出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內에서 實際로 계속하여 先使用한 者가 優先權을 가지나 新法에 있어서는 先願主義를 採擇함으로써 先出願者가 登錄을 받게 된다.

또한 둘 이상의 者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登錄을 同日에 出願한 경우 舊法에 있어서는 각 출원인의 協議에 의하여 그 가운데 1인이 登錄을 받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2인 모두가 登錄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新法에 있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천에 의하여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를 決定하도록 되어 있다.

나. 公知의 概要

舊法에서는 公知어디 있는 他人의 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은 指定商品이건 아니건 登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新法에 있어서는 同一 또는 同類의 商品 이외에는 登錄할 수 있도록 그 適用範圍를 緩和縮小하였다.

다. 他人의 商號

他人의 商號 또는 法人의 名稱을 포함한 것은 舊法에서는 그 者의 承認을 얻을 경우를 除外하고는 指定商品이건 아니건 登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新法에 있어서는 個人이나 法人의 營業範圍內의 商品과 出願하는 商標의 指定商品이 同一 또는 同類일 경우에 限하여 登錄할 수가 있다.

그러나 個人인 경우에는 國內에서 著名한 것이 아닌 안된다.

라. 既登錄한것과의 類似商標

他人의 既登錄商標와 類似한 商標의 登錄禁止範圍가 新法에서는 減縮되어 同一 또는 同類의 商品으로 限定하였으며 舊法에서 規定한 「同類가 아니더라도 性質이 같거나 類似한 商品」이란 登錄禁止範圍는 削除되었다.

마. 登錄取消과 再登錄制限

商標登錄取消後의 再出願에 대한 制限規定이 舊法에 없었으나 新法에서는 取消日로부터 3年間은 同一 또는 同類商品에 대하여 原登錄商標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의 登錄을 取消당한 者가 出願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다.

바. 聯合商標와 防禦商標

舊法에서는 聯合商標의 目的을 「品質을 區別하기 위하여」라고 定義하여 同一商品에 사용하는 것에 限定하고 있었으나 新法에서는 사용목적에 관한 規定을 削除하여 그 使用範圍를 同類商品에 까지 擴張하였다.

또한 新法에서는 防禦標章에 관한 規定을 두어 性質이 同一하거나 또한 類似한 商品에 대한 防禦標章의 登錄制度가 設定되었다.

사. 使用許諾

使用許諾의 許可條件에 대하여는 經濟部處의 經濟政策條件에 合致되어야 한다는 趣旨를 新法에 追加하고 또한 사용허락의 表示를 商品에 붙여야 한다는 것과 이를 違反하면 使用許諾許可를 取消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아. 存續期間

商標存續期間은 20年에서 10年으로 短縮되었다.

자. 權利侵害

新法에서는 侵害行爲의 定義, 排除方法, 損害賠償의 請求, 損害額의 算定方法 등을 具體的으로 規定하고 있다.

② 制度의 運用節次

가. 出 願

商標登錄出願은 商標를 使用하는 商品의 類別 및 商品의 名稱을 指定하여 出願書를 經濟部標準局에 願書로서 提出하여야 한다.

商品의 分類는 1類의 藥品에서 102類의 레코드, 錄音테이프에 이르기까지 103類(其他類)로 區分되어 있다.

商標登錄의 出願時에는 出願書以外에 着色을 指定한 商標見本 10部, 印版 1個를 添附해야 하며 상표견본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10cm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印版은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 6cm 이하이고 두께는 각 2,3cm이어야 한다.

한편 外國人이 商標登錄出願 또는 그밖의 절차를 밟을 때에는 國籍證明書를 添附하고 外國法人인 경우 법인임을 증명하는 書類도 添부해야 한다.

또한 外國人의 모든 書類가 外國語일 때는 中國語譯을 添附하고 駐中國公館 또는 標準局이 指定한 機構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出願에서 代理人으로 하여금 商標登錄出願을 하려고 하는者는 代理人委任狀을 添附하고 代理權限을 記載해야 한다.

出願人 또는 그 代理人의 姓名, 商號, 住所 또는 印鑑에 變更이 있을 경우에는 主務官署(標準局)의 變更登錄節次를 밟아야 한다.

또한 代理人 選任은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진 者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商標專用權의 處分에 대하여는 特別委任을 받지 않는 限 代理權을 行使할 수가 없다.

出願에서의 不登錄事由로서는

- (1) 國旗, 紋章, 記章, 勳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
- (2) 國家元首의 肖像이나 姓名과 同一한 것.
- (3) 國際聯合 및 赤十字의 名稱 또는 記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
- (4) 工業標準規格과 同一하거나 類似한 것.
- (5) 公共秩序, 美風良俗을 沮害하거나 公衆에 欺瞞, 誤認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있는 것.
- (6) 公知되어 있는 他人標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것으로서 同一 또는 類似한 商品에 사용되는 것.

(7) 他人의 登錄商標를 自己商標의 一部分으로 하여 同一 또는 同類의 商品에 使用하는 것 등이다.

나. 審 査

標準局은 商標登錄出願을 擔當할 審査官을 指定하여 審査하게 되는데 審査官은 다음에 例舉하는 事項의 하나에 該當되는 경우 除斥된다.

(1) 審査官의 配偶者등이 當該出願人이거나 人理人인 경우.

(2) 審査官이 當該出願人과의 親族關係에 있거나 法定代理人의 關係에 있을 때.

(3) 審査官이 當該出願人의 商標代理人 또는 財産上의 利害關係가 있을 때 등이다.

한편 標準局은 登錄出願된 商標를 審査한 결과 適法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出願人에게 審査書를 送達하는 한편 이것을 商標公報에 掲載하여 公告하고 3個月동안 利害關係人의 異議申請이 없거나 또는 異議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確定되면 이를 登錄한다.

그러나 登錄出願商標에 대한 審査結果 適法하지 못하다고 認定될 경우에는 審査官은 拒絕査定을 하게 되며 査定書에 그 이유를 記載하여 出願人이나 商標代理人에게 送達한다.

拒絕査定에 대하여 不服이 있을 경우 商標出願人은 30日 以內에 審判을 提起할 수가 있다.

또한 출원공고에 대하여 異議가 있으면 異議申請書에 事實 및 理由를 記載하고 副本 1通을 添附하여 標準局에 보내면 이것을 다시 出願人이나 그 代理人에게 送達하여 期間內에 答辯書를 提出케 한다.

다. 商標權使用 및 取消

登錄商標의 專用期間은 10年이며 登錄日로부터 起算한다.

그리고 10年마다 更新登錄出願을 할 수가 있으며 갱신출원은 期間滿了前 6個月以內에 原登錄證 및 商標圖案을 添附해야 한다.

한편 商標權者는 그 상표를 移轉하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他人에게 그 商標使用을 許諾할 수 있다. 이에 따라 商標의 許諾使用者는 그 商品에 商標의 許諾使用에 關한 表示를 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標準局은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의 請求에 따라 使用許諾許可를 取消하게 된다.

그 밖에 商標權의 移轉을 반드시 營業과 함께 해야 하고 聯合商標 및 防禦, 商標의 移轉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分割移轉은 許可되지 않는다.